

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0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8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가정·학교, 서비스업, 기업체,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인증제의 재원 조달과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

주요내용

가.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의 용도에 다음 사업을 신설하여 규정함.

- 안산시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사업(안 제4조제1항제9호).
-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(안 제4조제1항 제10호).

나. 융자한도액을 업체당 5억원 이하로 하되 동일 사업자의 경우라도 소재지가 다른 등록사업장은 개별업체로 보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의2제2항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2,200,000천원
 산출내역 : 별첨

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7. 8. 10. ~ 2007. 8. 20.(10일)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효율적인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가칭 안산에버그린환경 재단 설립계획

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안산시환경기본조례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 중 “오수처리시설”을 “개인하수처리시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9호를 같은항 제11호로 하고, 같은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른 환경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업
10.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

제4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대상은 안산시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한하며,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한한다.

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“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”을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6조제1항”으로, “동법 제13조제1항”을 “같은법 제2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“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”을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항제3호 중 “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”를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4조”로 하며, 같은항제4호·제5호 중 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”를 각각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”로 하고, 같은항제6호 중 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1조”를 “「하수도법」 제34조 및 제36조”로, 오수처리시설”을 “개인하수처리시설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제4호”를 “제3호”로 하고, 같은항제1호 중 “업체당 5억원이하”를 “업체당 5억원 이하. 다만, 동일 사업자의 경우라도 소재지가 다른 등록사업장은 개별업체로 본다.”로 한다.

제4조의4제1항 중 “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「경기도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, 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”를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”로 한다.

제4조의4제2항 중 “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업체”를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기업체”로 한다.

제4조의4제3항 중 “환경개선톤별회계법”을 “「환경개선톤별회계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4항 중 “제4조의2제3항”을 “제4조의2제4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5 각 호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안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안산시재무회계규칙”을 “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환경관리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관리과장 박 강 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환경기획담당 정 송 자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 송 자 (행정 2241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안산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의 규정에</u> 의하여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·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 7. <u>오수처리시설 또는 오·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보조사업 <신설></u> <u><신설></u> 9. (생 략) ② (생 략)</p> <p>제4조2(보조·융자대상 및 조건) ① 제4조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이자 차액 보조대상은 안산시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에 한하며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행하는 회사에 한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안산시 환경기본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도) ①....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개인하수처리시설..... 9. 「안산시 환경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른 환경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업 10.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 11. (현행 제9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2(보조·융자대상 및 조건) ① 제4조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대상은 안산시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에 한하며,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한한다.</p> <p>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6조제1항 같은법 제29조제1항 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..... </p>

현 행	개 정 안
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공급시설 1기소당 융자액이 7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보조액은 <u>제4조의2제3항</u>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율 범위 이내에 한한다.	④ <u>제4조의2제4항</u>
⑤(생략)	⑤(현행과 같음)
제4조의5(융자 및 보조금의 회수)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<u>다음 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제4조의5(융자 및 보조금의 회수) <u>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</u>
제13조(결산 및 보고)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<u>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</u> 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제13조(결산 및 보고) ① <u>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</u>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제14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<u>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</u> 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4조(위원의 수당) <u>「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</u>
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<u>안산시재무회계규칙</u> 을 준용한다.	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 <u>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</u>

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60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7. 9. 5.
제 안 자 : 경제사회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재단이 설립된 후에 기금에서 출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호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에 대해 삭제함.(안 제4조제10호)

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제4조제10호를 삭제하고,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10.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</u></p> <p><u>11. (생략)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9. (원안과 같음)</p> <p><u>< 삭제 ></u></p> <p><u>10. (원안 제11호와 같음)</u>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